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4) 대장균 군수(群數) 5)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가.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질관리기술사는 공학박사(환경공학 전공으로 한정한다),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업,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

로 한정한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